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가단1044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21,350원 및 그 중 1,717,28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953,8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7,953,84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D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① 2015. 8. 4. 금 15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6. 8. 4.,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을 각 연 29.9%로 하여, ② 2015. 9. 3. 금 1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6. 9. 3.,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을 각 연 29.9%로 하여, ③ 2015. 9. 25. 금 2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7. 9. 25.,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을 각 연 29.9%로 하여, ④ 2016. 1. 4. 금 1,0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21. 1. 4.,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을 각 연 29.9%로 하여 각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7. 6. 29.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7. 7. 17.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66578), “피고 B은 원고에게 25,096,385원 및 그 중 391,776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353,77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1,530,98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9,548,557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7. 12. 11. 피고 B에게 송달되어 2017. 12. 27. 확정되었다.

2) E 주식회사는 2016. 5. 3. 피고 B에게 금 2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8. 2. 26.,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7. 2. 13. F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F 주식회사는 2017. 2. 14.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후 F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8. 11. 2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2019. 12. 31. 기준으로 위 채권의 대여원리금은 3,321,350원(=원금잔액 1,717,280원 + 인수전 이자잔액 1,018,624원 + 인수후 이자잔액 585,446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6. 10. 19. G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G는 2019. 3. 12.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H, I, 피고 B, C(법정상속분 각 1/4)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위 상속인들은 2019.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0. 8. 24.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주식회사 관련 양수금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3,321,350원 및 그 중 원금잔액 1,717,2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관련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2)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4)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부모 및 형제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피고 B을 멀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으며, 피고 C이 부모에 대한 모든 부양을 도맡아왔었기에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단독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원고가 2019. 6. 13.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과 다른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동산을 압류할 당시 원고가 피고 C을 통해 그의 남편 M에게 ‘B의 총 채무액은 1,250만원인데 내가 잘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 647만원만 변제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1시간 만에 원고 측에 647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을 피고 C이 알았다면 위와 같이 다급히 647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금액을 변제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추심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3,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형제자매인 점,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66578)의 송달 장소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망인 및 피고들이 B의 대출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주소인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피고 C의 요청으로 647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였을 뿐 이를 두고 불법추심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2 내지 7호증과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설령 피고 C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상속인인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결국 피고 C의 기여분을 인정함에 다른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 B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던 K조합 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감정인 N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6. 11. 기준 가액은 114,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2019. 3. 25.) 피담보채무액은 42,184,615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위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K조합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71,815,385원(=114,000,000원 - 42,184,615원)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17,953,846원(=71,815,385원 × 1/4, 원 미만 버림)이고,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은 28,417,735원(= D 관련 양수금 채권 25,096,385원 + E 관련 양수금 채권 3,321,350원)이다.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8,417,735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 지분 상당액인 17,953,846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7,953,8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953,84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O에 있는 P건물 Q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R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187.06㎡, 2층 및 3층 각 159.76㎡, 4층 159.35㎡,

5층 149.85㎡, 옥탑 20.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O 대 3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S호 철근콘크리트조 42.1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12분의 24.29 끝.

